

2026

9급 국가/지방공무원
국회 법원 군무원 행정사 소방
행정법총론 입문

엠북 법학원

공부혁명!
mbook.kr

- ★ 스마트폰 수험총서
- ★ 휴대폰 화면에 최적화
- ★ 행정법 법률, 이론, 판례, 해설
- ★ 1시간 40분 완성

도서명 : 행정법총론 입문

ISBN : 979-11-7393-167-3

발간일 : 2026-02-26

형식 : 스마트폰용 전자책(PDF)

저자 : 엠북

출판사 : 엠북

홈페이지 : <https://www.mbook.kr/>

이메일 : by4782@gmail.com

정가 : 12,500원



행정법총론 입문

[목차]

제1장 행정법통론(p3)

제2장 행정작용법(p53)

제3장 행정절차와 행정공개(p122)

제4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(p139)

제5장 행정구제(p165~210)

(Copyright) 공부혁명! 엠북(mbook.kr)

제1장 행정법통론

제1절 행정

1. 연혁

- 행정의 관념은 역사적으로 성립/발전
-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해 국가권력을 입법, 사법, 행정으로 분리하면서 성립
- 19세기 시민적 법치국가는 공적 안전, 질서유지
- 20세기 사회적 법치국가는 균등배분, 복리증진

2. 개념

가. 형식적

- 행정기관에 의한 모든 작용

- 입법, 사법 포함

나. 실질적

- 법아래서 법의 지배를 받으면서
- 국가목적의 적극적 실현을 위해
- 현실적, 구체적이고 통일성 가진
- 계속적/형성적 국가활동

(비교) 사법작용은 법의 선언작용

3. 종류

가. 주체

- 국가, 자치, 위임행정(공무위탁사인)

나. 근거법: 공법/사법상 행정

다. 대상: 건축/학교/재무 행정

라. 목적

- 국가목적은 재무, 외무, 군사, 사법 행정
- 사회목적은 질서, 복리, 경찰 행정

마. 내용

- 1) 질서행정은 교통정리, 영업규제, 감염병예방
- 2) 급부행정
 - 공급행정은 교통/통신 시설, 보건/복지 시설 제공
 - 사회보장행정은 공적부조, 사회보험,

사회복지활동

- 조성행정은 청소년 보호/육성, 지식/기술 제공

3) 유도행정은 행정계획, 보조금지급

4) 계획행정은 건축계획, 보존계획

5) 공과행정은 조세, 공과금 징수/관리

6) 조달행정은 공무원 임용, 토지수용

바. 수단

- 권력행정(고권적 행정)은 경찰행정, 조세행정

- 비권력행정은 행정지도, 공법상 계약

사. 상대방에 대한 효과

1) 수익적: 허가, 특허

2) 침익적: 과세행정, 징집행정

3) 복효적: 수익적/침익적 효과 동시 발생

4. 통치행위

가. 개념

- 고도의 정치성을 가진 제4의 국가작용
- 입법/사법/행정과 구별

나. 대통령

- 국가원수 지위에서의 행위(외교행위, 사면)
- 총리임명 등 조직법상 행위
- 법률안 거부, 국민투표회부
- 비상계엄선포, 긴급명령

다. 국회

- 총리/국무위원 해임건의, 의원징계

라. 사법심사 배제

- 예외적 사법심사
- 정치적 법률분쟁
- 국헌문란
- 직접 국민 기본권 침해

마. 한계: 합목적적 구속, 헌법합치, 정의

제2절 행정법

1. 개념

가) 행정권의 조직, 작용, 행정구제에 관한
성문/불문의 국내공법

- 행정 조직/작용/구제법

나) 공법: 행정소송, 공법인, 공익실현 중심

- 이해조절법으로 접근 필요

다) 민주/법치/사회 국가원리 등 헌법의
기본원리 적용

라) 헌법과 행정법

- 협의의 공법

- 헌법의 규정과 정신은 행정법 해석의 지침과 기준
- 헌법은 행정법의 성문법원
- 헌법에 비해 정치적 변화에 덜 민감
- 오토마이어 '헌법은 변해도 행정법은 존속'

마) 특별행정작용법

- 행정주체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일체의 행정활동에 관한 법
- 시대와 국가에 따라 내용다름
- 현대 복지국가는 행정작용 범위 확대

(비교)

- 교육청의 업무용품 구입계약이나 청사의

건설도급계약은 사법의 대상

2. 특징

가) 형식: 성문법주의, 다양성

나) 성질: 재량성, 획일성/강행성,

기술성/수단성, 명령성, 대량성

다) 내용: 행정주체의 우월, 공익추구,

집단성/평등성

라) 행정입법이 많이 행해짐

(비교)

가) 강행법규

- 공서양속에 관한 규정

- 당사자의 의사로 적용 배제 못함
- 효력규정은 위반시 사법상 효과 부정
- 단속규정 위반시 제재(사법상 효과에는 영향없음)
- 행정법규는 주로 단속법규

나) 임의법규

- 당사자의 의사로 적용 배제 가능

제3절 행정기본법

1. 개요

-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
- 최초로 행정 실체분야의 단일법전 마련
- 모든 행정 분야에 적용되는 법 원칙과

실체적 사항을 담은 기본법이자 일반법

2. 불문법 영역의 행정의 法 원칙 등 성문법화

- 법치행정/평등/비례의 원칙과 학설/판례로
확립된 신뢰보호/부당결부금지 원칙 등을
행정의 법 원칙으로 성문화(8~13조)
- 기간 계산 기준 명시(6조)
-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할 당시의 법령을,
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을 따르도록
하는 등 신/구법 적용기준 규정(14조)

3. 행정의 효율성/통일성 제고

- 인허가의제(24~26조), 과징금(28조, 29조),

이행강제금(31조) 등 개별법에 흩어진 제도의
통일된 기준 마련

- 법률에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신고는
행정청이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효력
발생시점 명확화(34조)

4.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촉진

- 행정의 적극적 추진 근거를 명시해 행정의
투명성을 높이고 적극행정 촉진
(4조)

-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해 처분 할 수 있는
근거 마련(20조)

5. 국민 권익보호 수단 확대

가) 영업소 폐쇄 등 제재처분의 처분 가능
기간(제척기간)을 5년으로 제한(23조)

- 행정의 신속한 처분 유도 및 법적 안정성과
신뢰 보호

나) 이의신청 제도의 일반적 근거 마련(36조)

- 국민이 행정심판/소송 전에도 구제 절차를
한 번 더 가질 수 있게 함

다) 민/형사상 재심 제도와 유사한 처분의
재심사 제도를 행정에 도입(37조)

- 쟁송을 통해 다룰 수 없게 된 경우에도
처분 변경/취소/철회 신청 가능

제4절 법치행정

1. 개요

가. 행정법의 기본원리

- 법치/민주/복지 행정주의

나. 법치행정

1) 행정기본법

가) 법률우위

-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면 안됨

나) 법률유보

- 국민의 권리제한, 의무부과, 국민생활에

중요한 영향을 미칠 때 법률 근거 요

2) 개인권리침해시 사법적 구제

3) 법률로 구체적 범위를 정해 위임시

행정권은 위임 범위내 행정입법으로 세부사항
정함

다. 법치주의

1) 법언: 국왕도 법 아래에 있다

2) 형식적: 대륙법계

- 오토마이어: 법률의 법규창조력, 법률의 우위,

법률의 유보

3) 실질적

- 법의 내용도 인권침해가 없도록 보장

- 2차대전 이후 형식적 법치주의 반성

- 영미법의 법의 지배원리

2. 법률의 법규창조력

-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 법률만 법규 창조, 국민 구속
- 예외는
 - 대통령의 긴급명령, 긴급재정/경제명령
 - 국회/법원규칙, 행정법의 일반원칙

3. 법률우위의 원칙

- 국회 제정 형식적 법률이 행정권의 모든 활동에 우위
- 행정은 법률에 따라 행해져야 함
- 법률은 헌법, 법률, 법규명령, 행정법의 일반원칙 포함

- 단, 행정규칙 제외
- 위반시 무효/취소, 손해배상청구 가능
- 수익적/침익적 행위 불문, 행정의 전 영역에 적용

4. 법률유보(법률근거)의 원칙

가. 의의

- 의회가 제정한 입법에 근거, 법률수권에 의함
- 예) 조세법률주의
- 법률근거없는 행정활동 금지
- 법률에 근거가 없음에도 영업취소 처분시 법률유보 원칙 위배